



문서번호 천안교 제2025-110호

시행일자 2025. 12. 11.

수 신 본당 신부, 보좌 신부,
본당 수녀

참 조 공소 회장, 공소 수녀, 선교사

제 목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
및 수여 미사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수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 “함께 걸으며 복음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26년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 및 수여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직무 수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대상 : 교구 내에서 성체 분배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자, 선교사 및 평신도

1) 본당 사목구, 기관, 시설 내에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자, 선교사 및 평신도

※ 각 공소별로 2명 이하

※ 타 교구에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을 수료하고 성체 분배 직무를 받은 수도자가 우리 교구 내로 온 경우에는 본당신부나 기관신부의 청원을 통해 별도의 교육 없이 성체 분배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교구장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증명서’ 사본과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추인 청원서’[첨부4]를 사목국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우리 교구에서 성체 분배 직무를 받은 지 2년이 넘은 사람.

※ 2018년 5월 15일부터 교구 내 평신도 성체 분배 직무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 일시 : 1월 8일(목) 10:00-13:00(첨부2의 일정표 참조)
3.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변경할 경우는 신청자에게 별도로 변경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4. 준비물 : 미사준비, 개인 물통
5. 신청 마감 : 12월 30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첨부]
1.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신청서 1부.
 2.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 일정표.
 3. 천주교 안동교구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4.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주인 청원서(※타 교구에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교육을 수료하고 성체 분배 직무를 받은 수도자가 우리 교구로 온 경우).[끝]

천 주 교 안 동 교 구

사 목 국 장

황 영 화 마 티 아 신 부



<첨부 1>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신청서

번호	성명·세례명(수도명)	생년월일	직책	주소/연락처
1				
2				
3				
4				

● 신청 : sa3119@nate.com / Fax : 856-6101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본당(공소)

본당신부 _____ (인)

<첨부 2>

2026년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식 일정표

1월 8일(목)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20	접수	
10:20 – 11:00	강의	
11:00 – 11:20	휴식, 미사 준비	
11:20 – 12:20	미사 (성체 분배 직무 수여식)	주교님
12:20	식사 및 귀가	

<첨부 3>

천주교 안동교구 '비정규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1. 성체 분배자

- 가. 정규 성체 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1997년 8월15일, 제8절 1항 참조)
- 나.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 분배권을 받은 평신도이다.(교회법 제910조 2항; 제230조3항)

2. 비정규 성체 분배권

- 가.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2항 참조)
- 나.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 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31항)
- 다.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평신도의 사제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2항 참조)

3. 분배권 수여

- 가.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절 1항 참조)
- 나.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 (2) 수사, 수녀
 -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서이다.

4.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미사 거행 중에 또는 공소 예절시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 나.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 다.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 라.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공소에서 공소 예절을 거행할 경우.

5.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범위

- 가.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 나. 미사 밖에서는 사목자의 명시적인 허락하에 공소예절 중에만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공소 이외의 미사 밖 성체 분배를 위해서는 교구장으로부터 따로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 라. 성체 분배자가 안동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성체 분배 권한이 중지된다.
- 마. 평신도 성체 분배자의 권한은 권한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 바. 수도자는 한 번 성체 분배권을 수여받으면 안동교구 안에서 소임을 하는 동안 유효하다. 타 교구에서 성체 분배권을 받은 수도자는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증명서' 사본과 함께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원서를 교구장 주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으면,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관련 교육은 안동교구의 해당 교육 자료를 읽고 숙지하는 것으로 대신한다.(주교회의 2015년 추계 정기총회 승인)
- 사. 성체 분배권을 수여 받은 사람은 교구 내 타 본당, 타 공소에서 해당 지역 사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 아. 성체 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 시킬 수 있다.

6. 성체 분배자의 복장과 태도

- 가. 성체 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단정한 복장 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 나.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 단 공소 예절 시에는 예외이다.
- 다. 공소 예절시 성체 분배자는 촛불이 켜져 있는 제대 위에 성체포를 깔고 미리 준비된 물그릇과 깨끗한 수건으로 손을 씻은 후 성합을 감실에서 모셔와 성체포 위에 올려놓고 영성체 예절을 한다.

2018년 5월 15일

천주교 안동교구 교구장 권혁주 주교

<첨부 4>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추인 청원서

존경하는 주교님,

우리 교구에서 봉사하도록 소임을 받은 _____ 수도회의 _____ 수녀(수사)는 _____ 교구에서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를 수여받았습니다.

_____ 본당(또는 기관, 시설)에서 소임을 수행하는 동안, _____ 수녀(수사)가 “신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 첨부: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수여 증명서 사본

년 월 일

_____ 본당(기관/시설명) _____ 신부(기관/시설장)

(서명)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 추인서

청원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위의 청원을 수락합니다.

년 월 일

천주교 안동교구 교구장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서명)